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26-023호

중앙소방학교 공무직(시설관리/건축) 채용 공고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건축)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1월 17일

중앙소방학교장

1.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

가. 채용인원

분야	인원	성별	담당업무	근무시작일
공무직 (시설관리/건축)	**1명**	**남**	청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영선, 도장, 방수, 창호, 목공 등)	'27. 1. 1.(예정)

* 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자료 참조

나. 근로조건

○ **(신 분)** 공무직 근로자

※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근 무 지)**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소재)

○ **(근무형태)**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직무등급)** 3급 직무 ☞ 붙임 1 참조

○ **(보수지급)** 소방청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 ☞ 붙임 2 참조

- 기본급 2,084,880원(3급 직무), 정액급식비 160,000원
- 추가 근로수당, 명절휴가비, 후생복지(4대보험·복지포인트) 등

2.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 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며, 해당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붙임 3 참조

< 응시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응시자격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1. 전문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중 **건설 분야 (중직무분야: 건축)의 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 기 능 사: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 창호
-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 기 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기 술 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2. 학력

가.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건축분야(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디자인, 실내장식)의 학과 또는 이와 유사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3. 경력

가. 건축 분야에서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1] 및 법인, 단체, 민간기업에서 해당 채용예정 직무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건축분야의 학위관련 기준은「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건축 직무분야)에 따름

※ 자격관련 기준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름

※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의 업무 판단 기준은 채용시험 심사위원 심의에 따라 판단

3. 우대요건 ※ 제1차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응시요건과 중복사항 제외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유효하게 제출·등록한 사항에 한하여 서류심사 시 점수 부여

구분	우대요건
관련 근무경력 (공통사항)	‣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자격요건 동일 기준)의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경력(재직)증명서는 응시자의 [1]근무기간, [2]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담당업무), [3]발급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4]발행기관의 관인 날인 必,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각 경력 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우대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산정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류 보완 ※ 붙임6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관련 자격증 **(건축분야만 해당)**	‣ **건설 분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 창호,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토목, 토목구조, 상하수도, 콘크리트, 토목시공, 조경, 배관
관련 학력 **(건축분야만 해당)**	‣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건축분야(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디자인, 실내장식)의 학과 또는 이와 유사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사회형평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관련 증빙서류 필수

※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가점과 취업지원 우대**는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 **저소득층 우대는 5명 이상**인 경우 적용하므로 **해당없음**

4. 채용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 **(심사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심사방법)** 응시자격, 우대요건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 **(심사기준)** 각 분야별 최종 응시인원이 5인 이하(5배수)인 경우 소극적 평정표를 적용하며, 6인 이상인 경우 적극적 평정표 적용

○ **(합격자결정)** 5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 선발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되며,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극적 서류전형)

나. 제2차 면접시험

○ **(시험대상)**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블라인드 방식* 개별면접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 면접시험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 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고,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평정요소)**

❶ 공무직 근로자로서 업무에 임하는 자세

❷ 업무지식과 그 응용능력

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❹ 예의·품행 및 성실성

❺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다. 최종 합격자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전형 심사위원 심의를 통해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 본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자	주요내용
채용공고	'26. 11. 17.(화)	‣ 중앙소방학교 누리집 등* 게시
원서접수	'26. 11. 18.(수) ~ 11. 27.(금)	‣ 등기우편 접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12. 7.(월)	‣ 중앙소방학교 누리집 등* 게시
제2차 면접시험	'26. 12. 14.(월)	‣ 장소: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
최종합격자 발표	'26. 12. 16.(수)	‣ 중앙소방학교 누리집 등* 게시

* 중앙소방학교(http://www.nfsa.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11. 18.(수) ~ 11. 27.(금) 18:00까지<10일간>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접수 일체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표지에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제출주소)**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행정동 2층 교육지원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32522 ☎ 041-840-6612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제출서류 ☞ 서식 별도첨부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1. 응시원서 1부	서식 제1호
	2. 이력서 1부	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제3호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제4호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	서식 제5호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 제6호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서식 제7호
	8.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서식 제8호
	9.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선택	10.. 관련 자격증 / 졸업(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사본 - 자격증 사본은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 포함** - 유사학과 졸업 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서식 제10호)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1. 사회형평가점 대상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1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제9호)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제출해야 함

○ 필수서류 누락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결격처리 됨

○ 선택서류 누락 시 해당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 폐업자 업종 등의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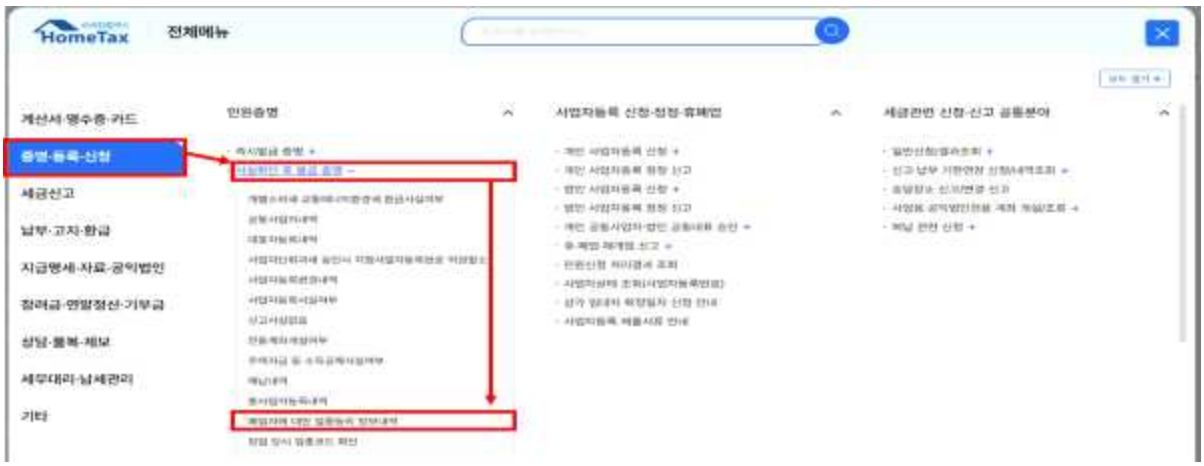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위 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라. 채용서류 반환

○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되므로, 접수여부를 유선(041-840-6612)으로 확인 바람

○ **(청구대상)**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서식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주소: rhdmsdid3@korea.kr ☞ 별도첨부 '서식 제9호'

○ **(반환방법)** 반환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되며, ①응시자가 직접 중앙소방학교로 내방하거나 ②등기우편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되며, 청구기간 이내에 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다만, 채용절차 관련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관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별도 관리함

8.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세부계획은 중앙소방학교 누리집 등*에 별도 공고함

* 중앙소방학교(http://www.nfsa.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고사항(시험일정, 안내사항, 합격여부)을 반드시 확인바람

○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자격·경력 진위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처리됨

○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문의사항	연락처	비고
채용 관련	041-840-6612	근무시간 09:00 ~ 18:00 / 토·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근무 관련	041-840-6633	

붙임 1. 소방청 공무직 직무등급표 1부

2. 2026년 소방청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 1부

3. 결격사유 1부

4. 직무기술서 1부

5. 제출서류 서식(서식 제1호 ~ 제10호) 별도첨부

붙임 1 소방청 공무직 직무등급표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표 2]

공무직 직무등급표(제15조 관련)

직무 등급	등급의 정의 및 내용	관련 직종
1급 직무	•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단순 직무	환경미화직
2급 직무	• 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조리업무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시설물의 출입자 관리, 순찰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환경미화직 근로자를 지휘·관리하는 팀장급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또는 유사한 직무를 추가수행하는 경우	행정직 지원직 경비직(청원경찰 제외) 환경미화직(팀장)
3급 직무	•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시설관리 등 기술직무 • 영상 기획·촬영·편집 등 영상제작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행정직, 지원직, 경비직(청원경찰 제외) 근로자를 지휘·관리하는 팀장급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기술직-시설관리 기술직-영상제작 행정·지원·경비직(팀장)
4급 직무	• 기술직 근로자를 지휘·관리하는 팀장급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기술직(팀장)
기타	•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직무	연구직

붙임 2 2026년 소방청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

□ 직무별 표준 임금표(기본급)

(단위 : 원)

단계급 / 직무등급	1단계(2년)	2단계(2년)	3단계(2년)	4단계(2년)	5단계(3년)	6단계
1급 직무	2,053,610	2,084,880	2,105,730	2,126,580	2,147,430	2,168,280
2급 직무	2,064,040	2,105,730	2,126,580	2,147,430	2,168,280	2,199,550
3급 직무	2,084,880	2,137,010	2,157,860	2,209,980	2,267,310	2,324,650
4급 직무	2,116,160	2,183,920	2,251,680	2,324,650	2,387,190	2,460,160

□ 직종별 직무등급 기준

직 종	임금 적용 기준	선임자 지정
환경미화직	• **(실무)** 임금표의 **1급**직무 단가 적용 • **(팀장)** 임금표의 **2급**직무 단가 적용	• **팀장 : 직종별 지정** ※ 소속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
경비, 조리, 사무, 운전	• **(실무)** 임금표의 **2급**직무 단가 적용 • **(팀장)** 임금표의 **3급**직무 단가 적용	
기술직 (시설관리, PD 등)	• **(실무)** 임금표의 **3급**직무 단가 적용 • **(팀장)** 임금표의 **4급**직무 단가 적용	

□ 보수의 구성항목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통상임금	기본급	• 직무별 표준 임금표	'26년 임금개편
	정액급식비	• 월 16만원	
	장기근속수당	• 월 8호봉~9호봉 15만원, 10호봉 이상 20만원 ※ '19. 1. 1. 기준 호봉제에서 전환한 근로자* 중 8호봉 이상	* 총 4명(본청3, 중구본1)
	자격수당	• 월 기술사 5만원, 기사 3만원, 산업기사 2만원	기술직에 한함
	선임수당	• 안전관리자 월 10만원, 안전관리보조원 월 5만원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 또는 자체검사자로 지정
	명절휴가비	• 연간 기본급의 120%	설, 추석 각 60%
법정수당	연장근로	• 통상임금÷209시간×1.5	월 21시간 이내
	야간수당	• 통상임금÷209시간×0.5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임금÷209시간×1.5 • 8시간 초과: 통상임금÷209시간×2.0	
	연차유급수당	•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 일수	
기타	성과급	• S등급(132%), A등급(122%), B등급(112%), C등급(미지급)	공무직 등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복지포인트	• 연간 50만원	예산편성기준에 따름

붙임 3 결격사유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19조(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3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4 직무기술서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채용예정신분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시설관리(건축)	공무직 근로자	1명	중앙소방학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주요 업무	○ 청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 · 관리 (영선, 도장, 방수, 창호, 목공 등 청사 내·외부 시설 및 기자재 보수) ○ 청사 시설 관리 전반(시설물 점검·조치, 기자재 보수, 기타 영선 작업) ○ 시설 공사(설계) 관리 · 감독 등 ○ 행정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 통 역 량)** 책임감, 성실성, 청렴성, 협업능력, 조직적응력 ○ **(직무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업무이해력, 안전수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자세
필요 지식	○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방수, 미장, 타일, 도장 등) ○ 작업공구 활용 능력(전동공구, 일반공구, 용접기 등) 및 자재 용어 등 ○ 시설 공사(설계) 관리 · 감독에 관한 전문지식 ○ 기타 건축 관련 분야 지식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전문 자격**(건축 분야 기능사 이상) 보유 - **관련 학력**(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디자인, 실내장식 등) 취득 - **관련 분야**(건축도장, 건축목공, 타일,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실내건축 등 건축분야 자격)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2)]* 및 법인, 단체, 민간기업에서 해당 채용 예정 직무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우 대 요 건 * 서류전형에 한하여 적용 * 응시자격 중복 제외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등급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중 기능사 이상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요건에서 제외 ※ 등급별 차등하여 종목별 합산. 단, 동일 종목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합산점수 최대값은 서류전형 만점의 20%를 넘지 못함)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학위별 차등 우대) - 응시작건 요건 외 추가 취득한 학위 ○ 관련 분야 실무경력(최대 3년 범위 내 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한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